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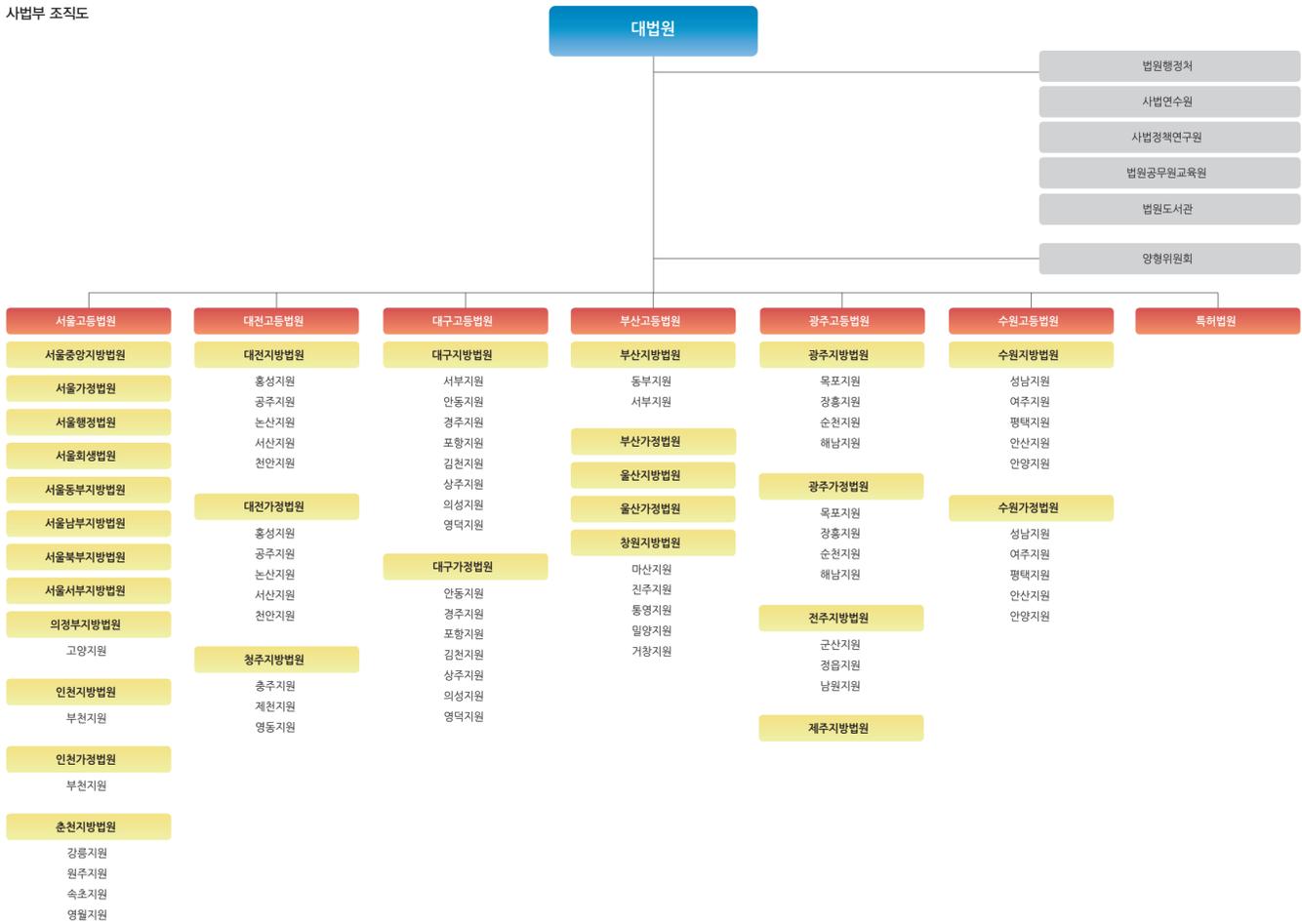
사법부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 처분을 담당).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등산·채권 담보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탁, 집행 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다.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보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 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룬다. 특허법원은 전문 법원으로 고등법원과 동급의 법원이고, 가정보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다. 지방법원 또는 가정보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

어 관할 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둘을 합하여 하나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제에서 진행되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국가의 안전 보장·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국어(國語)로 재판을 진행하되, 소송 관계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그 동안 전적으로 법관이 담당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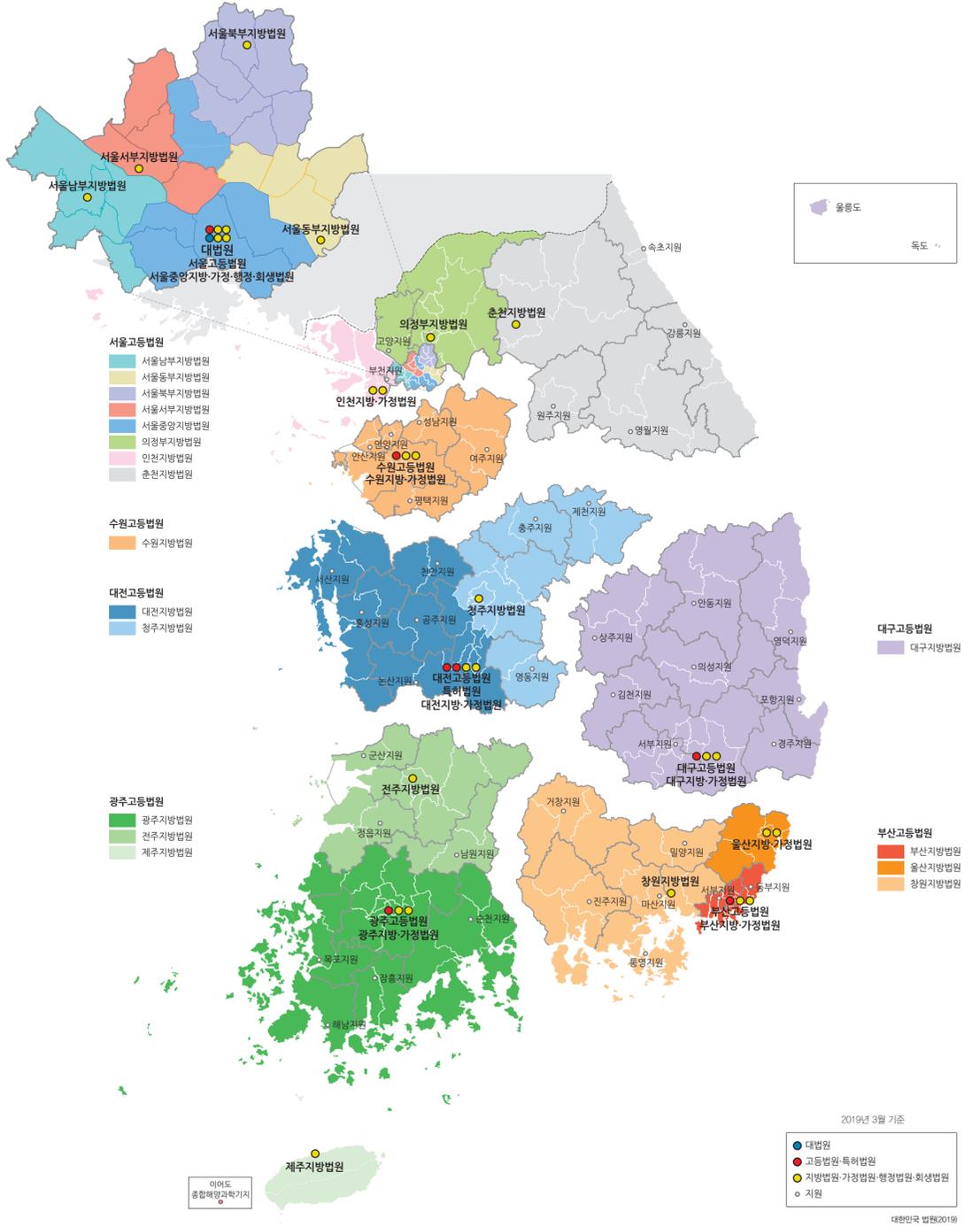
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삼심 제도를 운영한다. 단 특허재판과 선거소송 등에서는 2심제와 단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 조직도



사법부의 구성

전국 법원의 분포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도산·특허 및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도 재판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 진술, 관할한다. 명명·규칙·처분 또는 행정 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보유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범주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임명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맡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면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사립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들은 합의부가 심판한다.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41개의 지원이 있다.

행정법원

1998년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 수용, 근로, 일반 행정 등의 사건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처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 심판을 가지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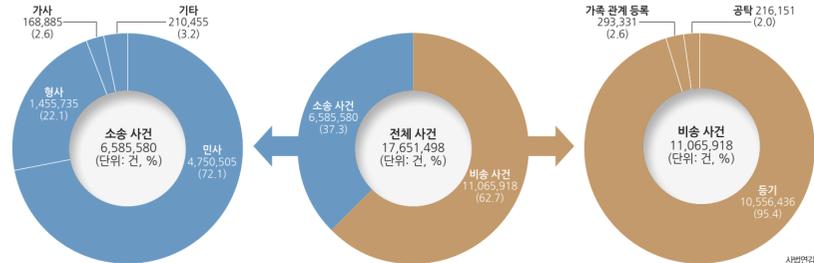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 1996년부터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권도 보유한다. 가사 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소년 보호 사건, 가정 보호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회생법원

회생법원은 법인 회생·법인 파산·일반 회생·개인 회생·개인 파산·국제 도산 사건과 그 관련 사건을 관장한다. 2017년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어 구조 조정과 개인 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절차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사법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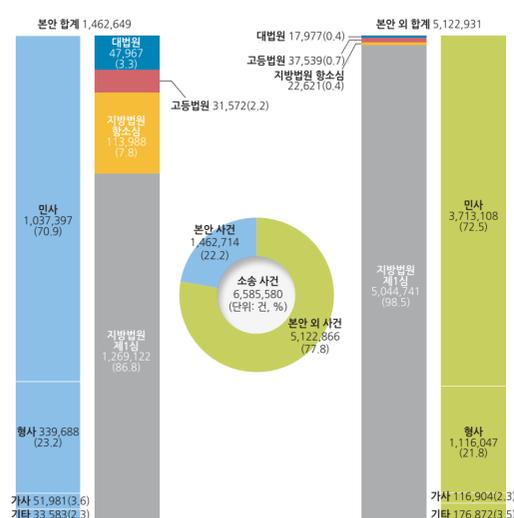
사건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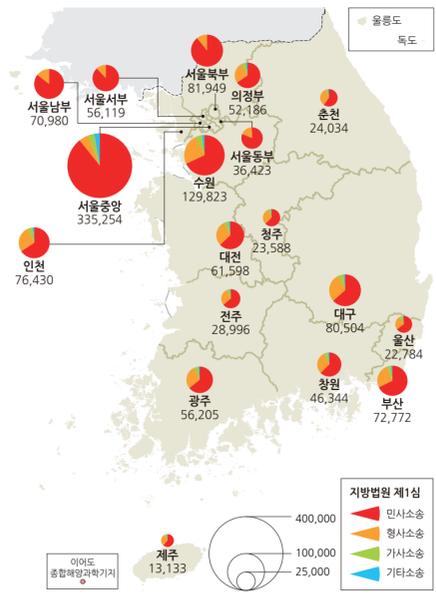
2018년 법원이 처리한 사건의 총수는 1,765만 건이다. 사건은 소송 사건(약 659만 건)과 비소송 사건(약 1,107만 건)으로 나뉘며, 그 비율은 37.3:62.7이다. 소송 사건은 민사, 형사, 가사, 기타(감치·과태료 60,028건, 소년 52,148건, 행정 47,930건, 가정보호 37,216건, 아동보호 4,851건, 피해자보호명령 4,061건, 피해아동보호명령 1,296건, 특허 1,517건, 인신보호 905건, 성매매 관련 466건, 선거 37건) 사건 순으로 많으며, 비소송 사건은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탁 순으로 많다. 한편 법원의 급별 처리 사건을 살펴보면 소송 사건의 경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항소심 및 제1심)에서 처리하고, 비소송 사건은 지방법원 제1심에서 처리한다.

소송 사건 약 659만 건을 사건별(민사, 형사, 가사, 기타), 종류별(본안 사건, 본안 외 사건)로 구분하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송 사건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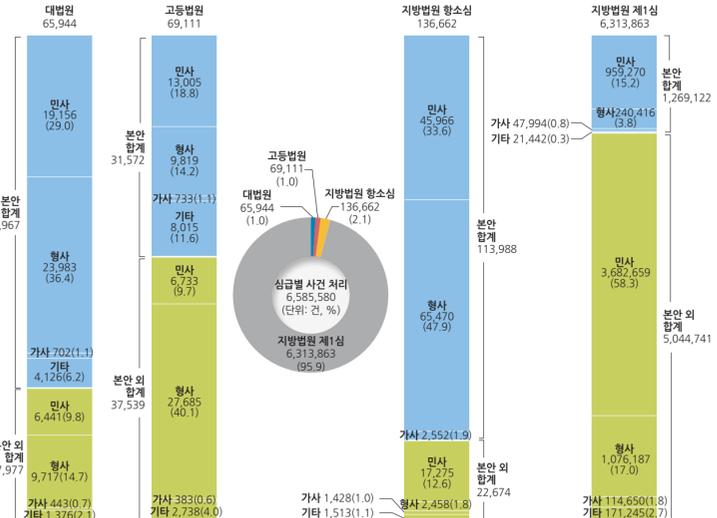


지방법원 제1심 본안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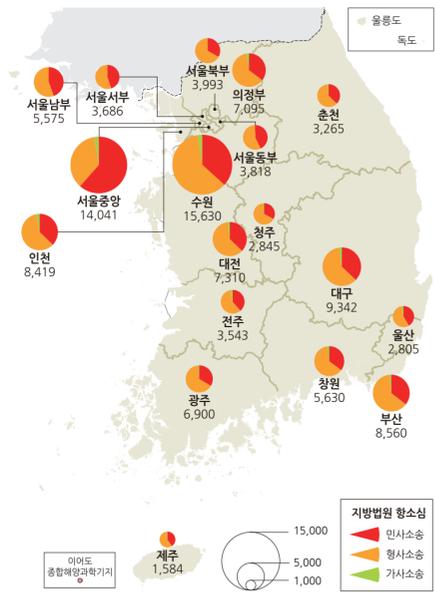


*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에 합선하였음.
**주: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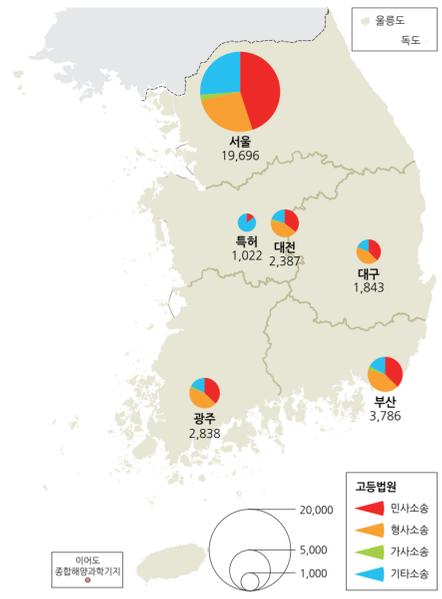
법원의 심급별 사건 처리 건수



지방법원 항소심 본안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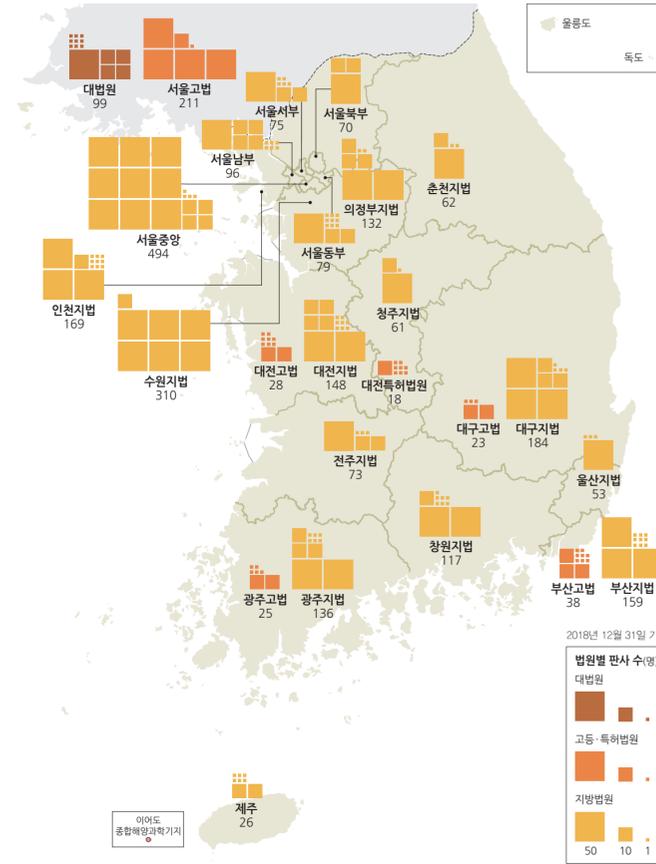
고등법원 본안 사건



*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에 합선하였음.
**주: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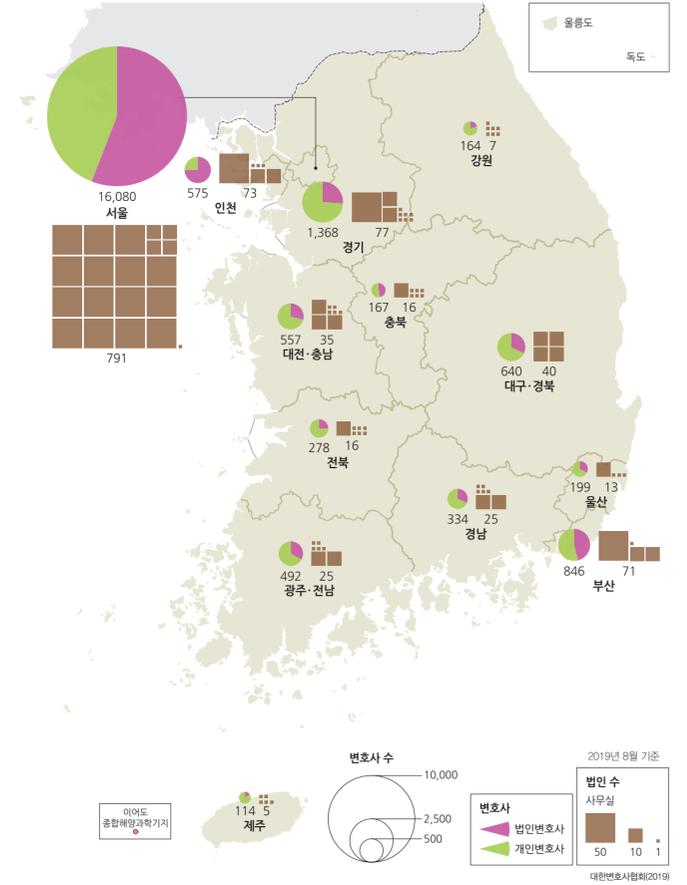
법률 서비스

법원별 판사 수



*주: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정원의 법관 28명(법원행정처 차장 1명, 사법연수원장 1명, 사법연수원 교수 26명) 및 미보임 산임법관 36명을 제외한 인원임.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함.

변호사와 법무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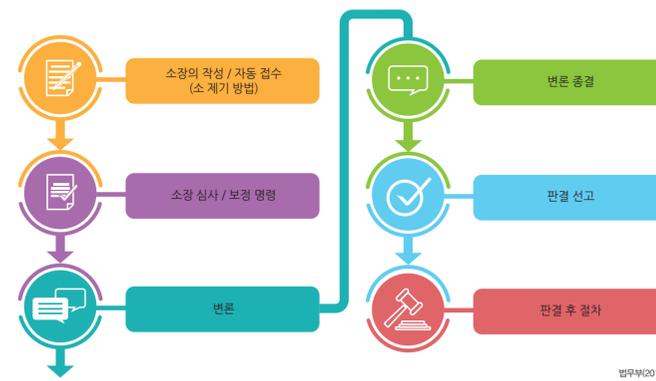


법관인 판사 임용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 임용 제도가 없어지고, 법조 경력자(신규 임용시기에 따라 3년 또는 5년 이상)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신규 법조인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하여 전국 25개 대학에서 2,000명 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이 중 법학석사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제직 중인 법관은 2018년 기준 2,886명이다. 한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민사 및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역시 법원의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역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법원 재판의 대부분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권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

한 재판이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관련하여, 1, 2, 3심의 절차 외에도, 소액 사건 심리 절차, 민사 조정 절차, 민사 집행 절차,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 공판 절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 및 보석,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유·무죄 판결, 항소 및 상고 절차, 즉결 심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재판 이외에도 등기와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그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 사무가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리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수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 구

역 내에서 등기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 기관으로서 등기소를 두고 있다. 등기소는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신청 사건 처리, 등기 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 증명 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무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또한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호적 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 관계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중정 호적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 관계 등록 사무의 관장자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등록 사무를 관장하더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민사 소송 절차



형사 소송 절차

